

‘21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문

가. 목 적

-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*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

*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: 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

나. 추진방침

-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보조지원 사업을 통해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 기여
- 특별기획점검(패트롤)과 연계를 통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감축 효과 거양

다. 추진절차



라. 추진내용

□ 지원대상 및 조건

1) 지원대상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 설치 사업주[전문건설업체*(하도급) 포함]

* 「철근·콘크리트 공사업」 및 「비계·구조물 해체공사업」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며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(공단ERP)기준으로 하여 시스템비계,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지원가능

※ 지원 제외 대상 :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)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,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,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
※ 당해년도 융자금 결정하고 지급된 사업장은 당해년도 보조금 신청 접수 불가

※ 당해년도 보조금 예산을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접수 시, 해당 차수에 접수된 신청 건은 우선 선정 기준(첨부 '우선선정 기준' 참고)에 따라 일부 건 수 접수 불가

2) 지원조건

- (시스템비계)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(조건표는 별첨 참고)
- (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*) 구입·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%,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60%,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% 지원
- *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현장 당 2개 이내 지원 가능

☞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의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의 보조지원

- 설치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에 대해서만 보조지원 가능

☞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

- 공단 지원금액에서 도급내역에 포함된 강관비계 금액, 안전방망 금액을 차감 후 지원

[공공 발주공사 보조금액] = {(시스템비계금액-강관비계 도급내역금액)/시스템비계금액}×해당면적 보조금

4) 지원한도 : 같은 현장 당 최대 3,0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

※ 같은 사업주 당 최대 3개 현장 지원 가능하며,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은 2개소를 1개 현장으로 산정함.

□ 절차별 추진내용(첨부의 '단계별 제출서류 안내' 참고)

○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업무 흐름도

안전보건공단	사업주	공급업체
	① 보조지원 신청 ㉠ 신청서 ㉡ 투자계획서 (a)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(b) 도면 및 서약서 (c) 기술지도계약서 ㉢ 중소기업지원 정보활용 동의서 ㉣ 사업자 등록증 사본	① 보조지원 신청 ㉠ 사업자 등록증 사본 ㉡ 비계구조물·해체공사 건설업 등록증
② 신청서 접수, 투자계획 확인 ㉠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공단↔사업주) ㉡ 공지사항		
③ 투자계획 확인 ㉠ 투자계획 확인표 ↳ 제출서류 확인(필요시 방문)		
④ 보조심사 위원회 상정 ㉠ 회의록		
⑤ 보조 대상 결정·통보 [15일 이내] ㉠ 결정 통보서		

안전보건공단	사업주	공급업체
	⑥ 시스템비계 임차 및 안전 방망 등 구입·설치 ㉔ 계약체결(사업주↔공급업체) ㉕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사업주↔공급업체)	⑥ 시스템비계 임대 및 안전 방망 등 설치·납품 ㉔ 계약체결(사업주↔공급업체) ㉕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사업주↔공급업체)
	⑦ 변경 요청 ㉔ 대표자 등 이력 변경시 ※ 면직 기간 변경시 요청 불필요	
⑧ 변경 승인 ㉔ 검토 후 승인여부 통보		
	⑨ 설비 투자완료 확인 요청 (사업주→공단) [설치 등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] ▶필수 제출서류 ㉔ 설비투자완료확인 요청서 ㉕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 사진(해당시) ㉖ 사다리형 작업발판 반입사진 (해당시)	
⑩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[확인요청 후 10일 이내 현장 방문] ㉔ 설비투자완료 확인표 ㉕ 사진 첨부 ㉖ 설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㉗ 산재소멸 여부 확인 후 편철RP 확인		
⑪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(공문) (공단→사업주) ㉔ 보조금 변경·확정금액 안내 ㉕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		
	⑫ 보조금 지급요청 (사업주→공단) ㉔ 보조지원설비 보조금 지급요청서 ㉕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사업주 및 공급업체) ㉖ 입금 희망통장 사본(사업주) ㉗ 전자(세금)계산서 사본 ㉘ 입금증빙서류	
⑪ 보조금 지급 ㉔ 국세청 폐업 확인 ㉕ (세금)계산서 사본 편철		
		⑬ 매입(매출)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(사업주, 공급업체→공단)

바. 사업수행 기준

○ 일반원칙

- 보조 대상설비

1. 수직·수평·가새재, 안전난간, 가설계단,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이 일체화된 시스템비계
2. 시스템비계 지원 현장에 한하여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) 및 수직보호망 지원
※ 지붕 공사 등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은 추락방호망만 별도 지원 가능

【안전방망 종류 및 규격】

품 목	기 준
낙하물방지망 (플라잉넷)	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- 사다리 : 폭30cm내외×길이2m이상
추락방호망	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수직보호망	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
3. 경작업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을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사용하는 사다리형 작업발판*

*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사다리(일자형 사다리, A형 사다리는 제외)로 안전인증(S마크)제품에 한함

※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해 동시에 사다리형 작업발판(현장 당 2개 이내) 보조지원 신청 가능

- 시스템비계 지원신청시 부대 조건

1. 수직보호망은 전면(4면)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설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
2. 플라잉넷은 비계설치 최고 높이 10m 이상시 설치(단, 수직보호망 전면 설치시 생략가능)

- 설치완료시 확인요청 기한(사업주→공단)

품목	설치완료 확인 요청 기한
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	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
※ 보조대상자의 연장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

- 보조지원품목 보조금 조건표 및 단가 등 (첨부 '조건표 및 단가' 참고)

※ 조건표 및 단가 변경 시, 공지 예정

○ 보조금액 산정

- (시스템비계) 보조금액 산정

· 설치면적 산정방법

- ① 설치면적(m²) = 건물 외주(4면)길이(m) X 높이(m) [높이(H) = 건물 높이 + 1m 적용]
- ② 경사부 높이 계산: 지면 및 건물 상단부 고저차가 있을 때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높이로 각각 계산

· 보조금액 산정방법

- ① 시스템비계 설치면적에 해당되는 보조금 조건표상의 일정액으로 산정
- ② 공공발주 공사인 경우 보조금은 $\{[(\text{시스템비계금액}-\text{강관비계 도급내역금액})/\text{시스템비계금액}]\times \text{해당면적 보조금}\}$ 으로 지원
- ③ 보조금은 천원 미만 절사
- ④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의 경우 조건표상의 보조금에 임대비 비율로 산정

- (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) 보조금액 산정

· 설치면적 등 산정방법

구 분	단위	설치 면적 등 산정방법
낙하물방지망 (플라잉넷)	m ²	건물 외주 길이 × 망 폭(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이상)
수직보호망	m ²	건물 외주 길이 × 높이, [높이(H) = 건물 높이 + 1m 적용]
추락방호망	m ²	가로길이 × 세로길이
사다리형 작업발판	개	3개 이내

· 보조금액 산정방법

구 분	단위	보조금 산정 기준
플라잉넷, 수직보호망, 추락방호망	m ²	면적 × 표준 단가 X 비율(0.5~0.65)
사다리형 작업발판	개	개당 표준 단가 X (0.5~0.65)

※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의 경우 안전방망은 재료비에 공사금액에 따른 비율(0.5~0.65) 적용,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적용

○ 재정지원 신청

- 신청서 제출방법 : 온라인 신청 원칙,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직접방문 제출 가능
- 보조신청 제한

제한기간	제 한 사 유
3년	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2년	아래 ②,③,④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 후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
1년	② 지급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③ 보조금을 목적 이외 사용한 경우 ④ 보조지원 후 해당 보조시설의 중대결함이나 관리상 중대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신청서 반려	보조신청 제한 기간의 종료 전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

○ 시스템비계 임대 및 안전방망 설치

- 계약체결: 사업주와 공급업체간 시스템비계 임대·설치·해체 및 안전방망 설치계약

- 불량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사용제한

·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부적합한 방망 사용 및 부식 또는 파손 등의 중대 결함이 있는 불량자재를 임대·설치·구입하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

- 시스템 비계 설치기준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준용) 준수

· 시스템비계 구성품목 일체를 설치하되,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준수

· 비계 설치높이 : 건물 높이 + 1m 이상

· 작업발판 폭 : 각 단별 작업발판 2열(40cm×2ea)설치를 원칙(사업장 여건상 부득이 1열 설치시 설치수량 만큼 정산)

· 벽연결(벽이음) :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비계의 전도 방지조치 실시

· 가설계단 설치 : 1개소 이상(건물외주(4면)길이 50m 이상 시 1개소 추가)

※ 가설계단은 돌출계단으로 설치하고 도심지 공사 등 돌출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내부계단 설치 가능

· 안전난간대 : 작업발판 외측으로 2단 설치

· 시스템비계 작업발판과 구조물과의 이격 거리 : 30cm 이하

- 안전방망 설치기준(KOSHA Guide 설치 기준 준용) 준수

· 수직보호망

① 확인사항 :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
② 방망고정 : 시스템 비계 수직재 및 수평재에 견고하게 고정

③ 수직보호망 설치시기: 시스템비계 설치 후 1주일 이내 설치

·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) 또는 추락방호망

① 확인사항 :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
② 수직보호망을 시스템비계가 설치된 전면에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생략 가능

○ 사다리형 작업발판

- 대 상 : 작업높이 기준 최대높이 3.5m 이하인 것으로 S마크 인증품에 한함

○ 투자계획의 변경

- 변경 및 승인 요청

- 지급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 일선기관에 공문으로 변경 요청하고 공단은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

① 지급대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명, 대표자 등의 이력이 변경되는 경우

② 결정된 보조대상 설비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

※ 예) 수직보호망에서 플라잉넷로 변경 또는 플라잉넷에서 수직보호망으로 변경 시

○ 설치·구입완료 확인

- 사업주의 설치·구입 완료 확인요청(사업주→공단)

① 요청기한 : 보조설비(시스템비계 등) 설치·구입 완료일로 부터 5일 이내

② 요청방법 : 보조지원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를 설치·구입 완료 후 5일 이내 공단 일선기관에 제출

③ 요청서류

기본서류

◆ 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
◆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 사진(해당시)

④ 공단의 설치·구입 확인 : 확인요청서 접수시 접수일로 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현지방문 후 설비투자완료 확인표와 설비 투자(설치)완료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 설치여부 확인 및 개선유도

※ 투자계획서 미이행시 : 보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되, 보완을 거부하거나 기간 내 미 보완시 결정 취소

-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시 특별기획점검(Patrol) 병행 가능

○ 보조금 확정금액 통보 및 지급요청 안내(공문)

※ 보조설비 설치면적, 수량 등이 감소하여 보조금 감액 시 감액사유, 이의제기 안내 및 절차 등을 공문으로 통보(설계변경 등 설치면적이 증가하여도 최초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)

○ 보조금 지급요청(사업주→공단)

- 사업주 보조금 지급요청

보조금 지급요청 제출서류

- ◆ 설비 임대·설치·해체·구입 계약서 사본
- ◆ 청렴의무 이행계약서(사업주 및 공급업체)
- ◆ 입금 희망통장 사본(사업주) 1부
- ◆ 입금증빙서류(실투자금액, 자부담금,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입금한 입증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)
- ◆ 전자(세금)계산서 사본 1부

○ 보조금 지급

- 요청시기 :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완료 현장
- 최종 실투자비용 변경(감액)이 있는 경우(시스템비계 해체 후) : 변경된 세금계산서 징구
- ※ 최종 실투자비용 초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인 후 환수 조치

- 사업주의 자부담 입증서류 미제출시 지급제한

- 사업주 자부담 입증서류 :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체를 공급업체로 입금한 입증서류
- 사업주 자부담 입증서류의 종류 및 구성요건
- ① 은행이 발급하는 입금(이체)확인증 : 사업주 및 공급업체 계좌번호, 예금주, 이체금액, 거래일시, 은행명 등이 표기
-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(신용카드 및 카드매출전표) : 공급자 확인(서명)필요
- ※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입금입증서류 미제출 시 보조취소 및 보조금 반환 절차 실시

- 매입(매출)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

- 제출대상 : 사업주 또는 공급업체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)
- 제출시기 : 차기연도 1월말까지

○ 보조결정의 취소

- 이의제기 기간 부여 : 취소 대상자에 대하여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 부여
- 보조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조건

전부	◆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취소	◆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(보조금 지급 전)

전부	◆ 보조금을 목적 이외 사용한 경우
또는	◆ 보조지원 후 해당 보조시설의 중대결함이나 관리상 중대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일부	◆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 매각·훼손·분실 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않은 경우
취소	◆ 지급대상자가 보조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	◆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(최대 5개월) 설치 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
	◆ 설치 완료 확인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내(30일)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
	◆ 그 밖에 보조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지사장등이 인정하여 보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

- 연락두절(사업주, 공급업체)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완 요구에 대한 보완 미 실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 취소

①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포함한 취소예정 공문 발송 → ② 내용증명 발송 → ③ 심사위원회 보조금 결정 취소 → ④ 보조금 부분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

※ 이의제기 기간 : 공문발송 후 20일 및 내용증명 발송 후 10일 등 총 30일 이상 부여

○ 보조금 환수

-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지침(보조금 환수 및 처리절차 기준)에 따라 운영

○ 재정지원사업 참가 공급업체 필요 서류(일선기관 사업신청시 제출)

- ◆ 사업자 등록증(종목란에 가설재 임대·설치·해체 표기) 사본1부
- ◆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부
- ◆ 비계.구조물 해체공사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(해당시)
- * 등록증 사본 미제출시 비계 공사금액(부가세포함) 1,500만원 미만 공사만 가능

※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급업체 게시를 원하는 경우 상기 서류를 공단본부로 제출